제정 2005. 10. 5 규칙 제 473호 전부개정 2014. 6. 9 규칙 제 746호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15. 4. 27 규칙 제 785호 전부개정 2018. 12. 14 규칙 제 943호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22. 12. 30 규칙 제109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) ① 「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
  - ②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납부필증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조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)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, 배출장소, 배출시간 및 배출용기 등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,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4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등) ① 조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 (이하 "공동배출자"라 한다)는 20세대 이상으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공동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운영기구를 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

- 2. 대상세대의 수가 변경된 경우
- 3. 공동배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
- 제5조(납부필증 판매소 지정) 납부필증 판매소는 「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」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하고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6조(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기준)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,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  -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,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부칙〈2018. 12. 14 규칙 제943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「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,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- 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「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"를 "「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부칙〈2022. 12. 30 규칙 제109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〉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생략>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제2호마목 중 "도시청결과"를 "자원순환과"로 한다.

[별표 1] 〈개정 2022. 12. 30〉

#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

(제2조제1항 관련)

#### 1. 공동주택

## 가. 재질

- 몸체 : 고밀도 폴리에틸렌(HDPE)

- 바퀴 : 고무

#### 나. 규격

구분 규격	폭 (밀리미터)	너비 (밀리미터)	높이 (밀리미터)	중량 (킬로그램)	두께 (밀리미터)	바퀴
120리터	475~490	535~560	930~970	11±0.5	4±0.5	200밀리미터×2개

다. 색상 : 노랑색

## 라. 특징

-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
-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
-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
- 용기 외부 양쪽 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리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
-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킬로그램의 내용물을 투입한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·파손이 없어 야 함.
- 용기 전면에 "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". "용인시"란 문구 및 "시 심벌마크"와 "관리표찰", "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"을 적정한 크기로 인쇄
- 용기 뚜껑 상부에 "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이용안내문" 인쇄

(전면 인쇄 외관)

(관리표찰인쇄 문구) (뚜껑상부 인쇄 문구)

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

<관리표찰>

<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>

<시 심벌마크>

용인시

관리번호 설치장소 관리자

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

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사 료 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 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배출요령은 앞면 참조)

(전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인쇄 문구)

##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

- 가축에 해로운 아래와 같은 이물질은 넣지 마세요.
  - 비닐봉투, 병뚜껑, 이쑤시개, 종이, 젓가락, 호일, 빨대, 일회용스푼, 고무장갑, 통 뼈. 조개껍질 등 각종 이물질
  - 동식물성 기름, 중금속 오염물질, 유독성 물질, 복어 내장류 등
- 통무우, 통배추, 통호박 등은 깍두기 크기로 잘라서 배출하세요.
-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최대한 줄여주세요

#### 2. 공동주택 외 지역

가. 재질: CO-PP(복합 폴리프로필렌). HDPE(고밀도 폴리에틸렌)

나. 구조 및 재질

구 분	규 격 (내부용량)	구 조	허용오차	재 질
	3리터		± 5%	CO-PP HDPE
	5리터			
공동주택 오 지역	20리터	ㅇ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		
	60리터			
	120리터			

## 다. 색상

- 뚜껑 : 주황색 또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색

- 본체 : 회색

## 라. 구조 및 표시사항

-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
-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
-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
- 용기뚜껑 상부에 "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", "용인시" 문구를 적 정한 크기로 인쇄
- 용기뚜껑 상부에 전용 납부필증 부착함을 부착하여야 함

#### 마. 뚜껑 상부 인쇄문구

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(리터)								
배출자 용인시	구	로	번길	<ul><li>◈ 납부필증 미사용 수거불가</li><li>◈ 납부필증과 용기 구입은 판매소 이용</li></ul>				
(	동	번지	কু)	<ul> <li>◈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</li> <li>◈ 문의 : <u>자원순환과</u>(☎031-324-3378)</li> <li>용 인 시</li> </ul>				

## 3. 다량배출자의 영업장 및 기타지역

- 1) 자원화시설로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
  - 가. 재질 : 고무류, 플라스틱(PE·PP)류, 스테인레스류 등 견고하며 부식되지 아니 하여야 함.
  - 나. 규격 : 해당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충분히 수집·보관할 수 있는 용량

#### 다. 특징

- 수집·운반이 용이하여야 함.
-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
- 용기에 "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"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기

## 2)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경우

가. 재질 : 플라스틱류(HDPE·PP, 80리터 이상은 HDPE)로 견고하여야 함. 나. 규격 : 다음 중 해당 영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적절한 용기

구분 규격	폭 (밀리미터)	너비 (밀리미터)	높이 (밀리미터)	중량 (킬로그램)	두께 (밀리미터)	바퀴
120리터	475~490	535~560	930~970	11±0.5	4±0.5	200밀리미터×2개
80리터	440~480	500~540	910~940	10±0.5	4±0.5	200밀리미터×2개
30리터	_	-	-	-	-	-
20리터	=	=	=	=	=	-
10리터	-	-	-	-	-	-

다. 색상 : 노랑색

#### 라. 특징

-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
-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
- 80리터 이상은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
- 외부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리터 단위로 표시
- 80리터 이상은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용량별로 80킬로그램 또는 120킬로그램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·파손이 없어야 함.
- 용기에 "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"이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기
- 80리터 이상은 용기전면 및 상부 뚜껑에 "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 령"표기
- 그 밖의 사항은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기준을 준용함.

# [별표 2]

#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

(제2조제1항 관련)

구분	용량 ( <i>l</i> )	종류	색상	주요 제작사항
	31	칩·스티커	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	
	5ℓ			○표시내용
가정용	20 ℓ			·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 증, 시 심벌마크, 용인시장, 용량 및
	60 l			용도 표시
	120 ℓ			○위조방지 ·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(비
	20 l	칩·스티커		표 및 홀로그램 삽입)
사업장	60 l			○규격, 색상, 디자인 ·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
	120 <i>l</i>			

#### [별표 3]

#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 · 배출장소 · 배출용기 등

(제3조 관련)

1. 수거일 : 매일 또는 격일

## 2. 배출장소

- 공동주택 :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설치 장소
- 단독주택: 문 앞,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 등은 차량 진입 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
- 기타지역: 해당 상가 건물 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등 ※ 시장은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

## 3. 배출시간

- 공동주택 :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
-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(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)
   하절기(5월~10월): 수거전일 19:00~수거일 06:00
   동절기(11월~다음해 4월): 수거전일 18:00~수거일 07:00
- ※ 시장은 수거여건에 따라 배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

#### 4. 배출용기

- 공동주택 :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(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 에 한함)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배출
- 단독주택 :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으로 배출(다만, 공동배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.)
- 기타지역 :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으로 배출

## [별표 4]

#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설치기준

(제6조제1항 관련)

## 1. 공동주택

가. 설치장소 : 단지 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장소 나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·운반이 용 이한 장소

- 나. 설치수량(다만,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)
  - 전용용기 : 2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설치
  - 종량제기기 : 공동주택 총 세대를 기준으로 60세대당 1대 이상 설치 (중간 집하장을 설치·운영 할 경우 실제 사용 세대를 기준으로 설치 하고 최소 수량은 2대 이상으로 하여야 함)

#### 2. 다량배출자

가. 설치장소 : 당해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 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·운반이 용이한 장소

나. 설치수량 :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 로 2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

#### 3. 공동운영기구

가. 설치장소 : 설치장소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, 공동운영 기구 에 등록된 세대원 다수가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·운 반이 용이한 장소

- 나. 설치수량(다만,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)
- 전용용기 : 납부필증 규격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설치
- 종량제기기 : 총 세대를 기준으로 60세대당 1대 이상 설치

## [별표 5]

#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

(제6조제2항 관련)

#### 1.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 주체

가. 공동주택 : 아파트 관리사무소(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는 주민대표

기구가 된다)

나. 단독주택 :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

다. 공동운영기구 :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

라. 기타(음식점 등):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

#### 2.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

가. 대상 : 종량제기기

나. 관리시스템 유지관리

-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, RFID카드 관리
-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 연계사항, CDMA 통신상태 유지관리
- 개별계량장비의 외함(함체), 저울부, 회로기판(보드), 통신부, 구동부, 리더부, 펌웨어(업데이트 포함), 예비보관대, 장비설치 관련 기반・ 전기작업 등 현장장비 자체, 운영체제, 부대시설・물품과 유지보수

#### 다. 주기

- 정기점검 : 매월 전체 장비의 15%이상 실시
- 수시점검 : 시장 요구 또는 한국환경공단시스템상 수시 장애 발생 장비(4시간 이내 처리)

- 3. 위생관리 대상 및 방법
  - 가. 대상 :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, 종량제기기, 전용수거용기
  - 나. 수거용기 세척
    - 깨끗한 물, 고압스팀, 세제 등을 사용해 수거용기의 내부 및 외부를 세척하고 마른 걸레 등으로 물기 제거 후 건조
  - 다. 수거용기 소독
    - 생물학적 독성이 약한 살균·소독제, 악취제거제, 염소계 세제희석액 등을 분무기를 이용해 수거용기 내부 및 외부에 골고루 살포하거나 고압고온 스팀으로 소독
    - 그 후 자연건조 하거나 깨끗한 물로 세척 후 건조
  - 라. 주기 : 월 2회 이상 실시(동절기 제외)

# [별지 서식]

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(변경, 해지)신고서										
공동운영기구 명 칭			신청			성세대~	Ť			
대표자	성	명	생년 (사업자등			년월일 }등록!				
네표시	주	소	(전화번호:			)				
주 택	형티	A	연립( 세대), 디	구세대(	세대	), 다기	<b>)</b> 구( 세	대), 기타( 세대)		
Hi 7	· 임사항		변경조	전		변경후				
인/6	3/1%									
변경(해	지) 시	<b>ት</b> 유								
조례」 와 같이 ※ 첨투 1. 공동	「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,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※ 첨부서류 1. 공동배출자 동의서 1부. 2. 종량제기기 설치계획(설치개수 및 장소 포함) 1부.									
				년	월		일			
			대표자 성 주 전화		명 : 소 : 호 :			(인)		
용인시장 귀하										